

2026년 경주시 청년창업지원사업 모집 공고

2026. 4.

동국대학교WISE캠퍼스 산학협력단

- 1 -

모집개요

- 모집인원 : 청년창업가 4명
- 모집대상
 -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~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이내인 자
 - ※ 대상기준 : **생년월일(1987.1.1.~2007.12.31), 사업자등록일(2025년 02월 이후)**
- 모집 분야
 - 기술·지식·6차산업·일반 창업

분 야	대 상 업 종
기술창업	기계, 재료, 전기·전자, 정보통신, 화공, 섬유, 생명, 식품, 환경, 신재생에너지 등
지식창업	지식콘텐츠, 마케팅홍보, 전문컨설팅, 디자인, 번역, 웹디자인, 프리랜스, 통신업, 문화서비스업, 통신판매업, 아이디어 창업 등
6차산업 창업	농업과 연계된 가공 및 서비스업
일반창업	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창업, 지역본사 프랜차이즈창업 등

※ 일반창업은 육성목표의 10% 이내로 하되, 단순한 온라인쇼핑몰 창업지원 지양

<6차산업 관련 사업분야>

- 가공 : 지역 농특산물을 생산 및 가공사업화 시킨 형태
- 농가외식 : 농촌에 있는 우리 고유의 숨씨를 외식산업으로 연결한 형태
- 농촌교육농장 : 농업농촌이 가지는 교육적 기능을 전문화 시키고 사업화 시킨 형태
- 농어촌 민박 : 지역의 주거공간과 서비스공간의 융복합된 형태
- 농촌체험관광 :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관광서비스사업과 연계시킨 형태
- 유통직매장 : 유통서비스에서 불필요한 비용요소를 줄여 상생체계를 구현한 형태

- 2 -

○ 지원제외 대상 업종

분 야	대 상 업 종
금융부동산	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
요식숙박	숙박, 음식점업(단, 지역특산물 활용한 음식점 제외)
유흥접객	무도장, 유흥접객영업(주점 등)
레저	골프장, 스키장, 갠블링, 배팅업
기타	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시

II 신청 방법

- 신청기간 : 2026. 04. 01.(수) ~ 2026. 05. 10(일)
- 신청방법 : E-mail 접수 (vbi@dongguk.ac.kr)
- 신청서류
 -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, 개인(기업)정보제공 및 신용조회동의서 1부
 - 주민등록등본 1부(必)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신청제외 대상
 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
 -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
 -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(지자체)의 타 사업으로부터 동일기간 내 중복지원 수혜자

- 참여기간 1회로 제한
- 국세, 지방세, 체납자 및 폐업 후 2개월 미만인 자
- 1년이 초과된 타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자
- 기타 경주시장이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- 접수 및 문의
 - 주소 : (780-714) 경북 경주시 동대로123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산학협력관 1층 벤처창업보육센터
 - E-mail : vbi@dongguk.ac.kr
 - 문의 :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벤처창업보육센터(Tel : 054-770-2634)

III 주요 지원내용

- 총 지원기간 : 2026. 협약체결일 ~ 2026. 12. 31.
- 창업공간 지원
 - 창업공간 무상제공(산학협력단 5층 코워킹 스페이스)
 - 인터넷 무상제공
 - 회의실, 공용사무기기, 상담실 사전예약 사용가능
 - 입소 시 별도로 입소계약을 체결
- 창업활동비 지원
 - 창업활동비 지원기간 : 2026. 협약체결일 ~ 2026. 12. 31.
 - 총 지원금액 : 1팀당 최대 1,200만원(2회 분할지급 : 상반기 600만원, 하반기 600만원)

○ **창업활동비 집행 (월 4h이상 교육 의무출석)**

※ **상기 7개 분야 중 한 분야가 전체 활동비의 70%초과 금지**

- **상품화 제작비**

- ① 재료구입비 : 시제품(샘플)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(판매목적의 재료구입 불가)
- ② 외주 용역비 : 창업자가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(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에 한함)
- ③ 장비임차료, 시험 분석료

- **정보 활동비(총 지원금의 20% 이내)**

- ① 도서 및 자료 구입비
- ② 관련 전시·박람회 참관, 교육 등 참가 및 등록비
- ③ 교육비(청년창업자가 운영기관이 개설하는 교육 이외의 외부 교육 참여시 발생하는 비용)

- **공간임차료(총 지원금의 50% 이내)**

- ①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장소임차
 - ※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(예정)장소를 원칙으로 함
 - ※ 임대보증금, 관리비, 거주형태 공간의 임대료 집행 불가

- **시장개척 및 홍보비**

- ① 홍보비: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, 온·오프라인 광고비, CI 및 BI 제작 등
- ② 전시회 참가비 : 부스임차비용 및 장치비용
- ③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

- ④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: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 등

- ⑤ 각종 인증획득비 : 사업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품 및 시스템 인증비

- **수용비(총 지원금의 10% 이내) :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, 복사, 인화, 소모품, 사무용품 등**

※ **식대, 임차료, 제세 공과금, 자산성격의 물품(컴퓨터, 사무기기, S/W등) 구매는 불가능**

- **회계처리비 : 세무대리인을 통한 세무기장에 필요한 실 소요비용**

- **4대 보험료 (5명 이내) : 피고용자의 4대보험료(국민연금, 건강, 고용, 산재보험)**

□ **창업교육 지원(월 4h이상 교육 의무출석)**

○ 오리엔테이션 및 창업실무 교육 : 총 7회

- 청년창업 사업비 사용 설명

- 창업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창업의지와 기업가 마인드 배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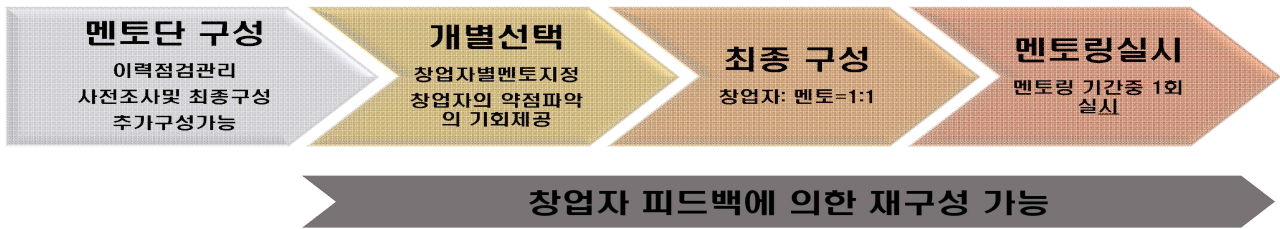
□ **멘토링 지원 : 2025. 06. 01 ~ 2025. 12. 30**

○ 기간 내 1회 진행

○ 멘토 1인당 1명의 창업자를 담당함

○ 멘토링 기간 중 다른 분야의 멘토로 변경 가능함

○ 대면 및 유선,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원격 멘토링



- 창업정보 제공 및 창업자금 알선
 - 정부 및 관련기관 창업지원사업(창업넷, 기업마당 등) 정보제공 및 지원
 - 청년창업전용자금 알선(중소기업진흥공단, 기술신용보증기금, 경북신용보증재단 등)
- 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 지원
 - 청년창업선정자는 별도 심사 없이 우선입주 혜택부여

IV 심사 및 평가

- 선정 심사
 - 선정방법
 - 서류심사 :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평가
 - 발표심사 :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선정심사기준에 의해 평가
 - 선발예정인원에 대해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
 - 심사위원의 심사기준 미달시 선발예정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 - 세부일정

모집 공고 경주시, 동국대학교(WISE) 26.04.01(수)	▶	신청·접수 동국대학교(WISE) 26.04.01(수)~05.10(일)	▶	서류심사 동국대학교(WISE) 25.05.11(월)~05.15(금)	▶	서류심사 결과 발표 iacf.dongguk.ac.kr 26.05.18(월)
↓						
오리엔테이션 창업보육센터 회의실 26.06.15(월)	▶	최종 선정자 발표 iacf.dongguk.ac.kr 26.06.11(목)	▶	사업장 현장실사 동국대학교(WISE) 26.06.09(화)	▶	발표심사 동국대학교(WISE) 26.05.29(금)

※ 상기 일정은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홈페이지(iacf.dongguk.ac.kr)에 공지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사업진행도 및 창업활동비 집행내역 점검

- 입소 후 2개월 단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진행도 점검
- 사업계획 대비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경고조치 및 중간평가에 반영, 경고 2회 이상이면 퇴출 가능
- 사업비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시행(제재 및 환수)

□ 중간평가

- 협약기간의 1/2시점에서 사업진행 성과와 교육·행사 참여도 등을 토대로 평가
-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10%이내에서 지원중단, 퇴출 등 조치할 수 있음

V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

- 선정된 창업자는 동국대학교벤처창업보육센터 산학협력관 5층 창업공간에 입소
- 사업기간 내 **사업자 등록증 의무제출(2026년 12월까지)**
- OT 및 창업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(**월 4h이상 의무교육 실시**)
- 참가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,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**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(예비)창업자에게 귀속됨**

[별첨 1]

창업지원 제외 업종

창업지원 제외 업종 범위		제외업종 범위 중 예외업종 (창업지원가능 업종)
업종명	한국표준 산업분류 CODE	
금융 및 보험업	64*** ~ 66***	
부동산업	68***	
숙박 및 음식점업	55*** ~ 56***	·호텔업(55111) ·휴양콘도 운영업(55113) ·상시근로자 20명이상 법인기업형 음식점업 (561**)
무도장 운영업	91291	
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9112*	
기타 gambling 및 베팅업	91249	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***	·산업용 세탁업(96911)

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 준용

[별첨 2]

< 부정사용자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기준 >

참여제한 및 지원금(활동비) 회수사유		제재 및 환수범위	
		제한기간	지원금 환수액
1	사용내역 허위보고 및 사용용도 이외 사용	2년	지원금 전액
2	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교부받은 경우	3년	지원금 전액
3	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화 과제수행 포기	3년	지원금 전액
4	보고서 미제출 등 시정조치 불이행 시	2년	지원중단, 퇴출

* 사업 지원기간 종료하고 창업(사업자등록) 후 보증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 시 : 환수

*지원금 환수기준

1. 사용내역허위보고, 사용용도 이외 사용 : 기 집행금액 포함 지원금 총액
 2.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 : 지원금 총액 환수
 3.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화 과제수행 포기 : 기 집행금액 포함 지원금 총액
- *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, 중병, 교통사고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4. 시정조치 불이행 : 지원중단, 퇴출